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경제적 약자가 지식재산을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허심판에서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당사자에 대하여 심판절차와 관련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이 개정(법률 제16208호, 제16203호 및 제16205호, 2019. 1. 8. 개정, 7. 9. 시행)됨에 따라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당사자에 대해 심판청구료, 정정청구료 등을 면제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개인, 소기업, 중소기업 등이 기술신탁관리기관에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기술신탁관리기관에 대해 신탁이 설정된 특허권 등의 특허료 등을 4년분부터 존속기간까지 감면하고, 특허권 등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가 특허증 등을 전자문서에 의해 발급받는 경우 최초 설정등록일부 터 3년분의 특허료 등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4. 5. ~ 5. 1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한다.

제2조제2항제6호, 제3조제2항제6호, 제4조제2항제6호 및 제5조제2항제9호 중 “취소·말소”를 각각 “취소”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부신청”을 각각 “발급 신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특허증, 실용신안등록증, 디자인등록증(관련디자인등록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상표등록증(단체표장등록증,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증, 증명표장등록증,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증, 업무표장등록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외국어특허증, 외국어실용신안등록증, 영어디자인등록증, 영어 상표등록증(영어 단체표장등록증, 영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증, 영어 증명표장등록증, 영어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증, 영어 업무표장등록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재발급 신청료

가. 재발급 신청을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매건 5천원

나. 재발급 신청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 매건 6천5백원

다. 온라인으로 수령하는 경우: 무료

제6조제1항제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교부신청”을 각각 “발급 신청”으로 한다.

휴대용 특허증,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 휴대용 디자인등록증, 휴대용 상표등록증, 휴대용 외국어특허증, 휴대용 외국어실용신안등록증, 휴대용 영어디자인등록증, 휴대용 영어 상표등록증의 발급(재발급을 포함한다) 신청료

제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교부신청료”를 “발급 신청료”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교부신청”을 “발급 신청”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단서 중 “교부”를 “발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교부신청료”를 “발급 신청료”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교부신청”을 “발급 신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단서 중 “교부”를 “발급”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교부신청료”를 “발급 신청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부”를 “발급”으로 한다.

제7조제2항에 제9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제6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기관의 경우(개인, 소기업, 중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4년분부터 존속기간까지의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및 디자인등록료의 100분의 50

제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버린다”를 “올림한다”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실용신안권자 또는 디자인권

자”를 “실용신안권자, 디자인권자 또는 상표권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8조제16항에 따라 특허료·등록료 또는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는 경우 등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국선대리인이 선임된 당사자에 대한 심판청구료 등의 감면에 관한 특례) 「특허법」 제139조의2(「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디자인보호법」 제125조의2 또는 「상표법」 제124조의2에 따라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당사자가 특허심판원장에게 납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해당 심판사건에 대한 심결의 등본이 송달된 후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를 반환한다. 다만,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국선대리인 선임의 취소 또는 국선대리인 사임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제2조제3항제1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
2. 제3조제3항제1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
3. 제4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
4. 제5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

제8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⑤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는 최초 3년분을 특허결정, 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일시

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증, 실용신안등록증 및 디자인등록증을 전자문서에 의해 발급하는 경우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각각 1만원(총액이 1만원 미만이면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제7항제1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상표등록증을 전자문서에 의해 발급하는 경우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1만원(총액이 1만원 미만이면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디자인권자 또는 유사디자인권자”를 “디자인권자(관련디자인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전단 중 “디자인권자 또는 유사디자인권자”를 “디자인권자”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 전단 중 “제16항에 따른 등록세 또는 인지세”를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1호와 같은 항 제12호에 따른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에 따른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인지세법」 제8조의4에 따른 인지세”로 하고, 같은 조 제14항 중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하며, 같은 조 제17항 중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1호와 같은 항 제12호에 따른 등록세(「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에 따른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인지세법」 제8조의4에 따른”을 “등록면허세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8항 중 “등록세”를 각각 “등록면허세”로 하며, 같은 조 제19항 중 “등록세”를 각각 “등록면허세”로 한다.

제9조의 제목 “(반환할 특허료·등록료·수수료 및 등록세의 납부사항 정정)”을 “(반환할 특허료·등록료·수수료 및 등록면허세의 납부사항 정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가목 본문 중 “130만원”을 “120만원”으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반환한다”를 “반환(제4항에 따라 조사료를 감면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item3(d)”를 “item4(c)”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자로서 해당 국가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자(둘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출원인 모두가 해당해야 한다)가 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한 국제출원의 조사료에 대해서는 100분의 75를 감면한다.

제10조제5항(중전의 제4항)제1호 중 “하나만 작성된 경우(작성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나가 작성된 경우”로, “100분의 30”을 “100분의 70”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7항) 중 “제4항 각 호”를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제9항(중전의 제8항) 중 “제4항 각 호”를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3호가목 및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말소등록 신청 수수료에 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제6호, 제3조제2항제6호, 제4조제2항제6호 및 제5조제2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술신탁관리기관에 대한 특허료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9호의3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및 디자인등록료를 납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평균감면율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5항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1.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디자인등록출원, 분할출원, 변경출원
2.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청구,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청구,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
3.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위한 특허결정, 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 발송

제5조(특허증 등을 전자문서에 의해 발급하는 경우의 설정등록료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5항 및 제7항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설정등록을 위한 특허결정, 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이 발송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하는 경우의 조사료 인하에 따른 적용례) 제10조제1항제3호가목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국제출원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7조(국제출원에 대한 심사청구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특허법」 제199조 또는 「실용신안법」 제34조에 따라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심사청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특허(등록)료 · 수수료 · 등록면허세 · 인지세 납부안내서(영수증)

1. 납부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출원번호, 등록료, 총금액 등이 정확하지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십시오.
 2. 면제 또는 감면대상자, 청구항 축소, 상품류 축소 등에 따라 정상 특허(등록)료에 변동이 있는 고객께서는 반드시 특허청에 확인하신 후에 특허(등록)료를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3. 요금의 종류
 - 가. 특허료·등록료
 - 나. 수수료: ①출원료 ②심사청구료 ③심판청구료 ④국제출원수수료 ⑤보정료 ⑥특허권 등의 권리이전 등록료 ⑦그 밖의 수수료
 - 다.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특허권 등의 권리이전 및 상표권의 설정 및 갱신 등록에 포함·상표권 설정 9,120원(등록면허세: 7,600원, 지방교육세: 1,520원), 상속에 의한 권리이전 14,400원(등록면허세: 12,000원, 지방교육세: 2,400원), 상속 이외의 원인으로 한 권리이전 21,600원(등록면허세: 18,000원, 지방교육세: 3,600원)]
 - 라. 인지세: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액
 4. 이 고지서를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특허청 본청 또는 특허청 서울사무소에 문의하여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요금은 가까운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그 밖의 문의사항은 특허청 특허고객 상담센터 (☎1544 - 80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면제 또는 감면은 발명자와 출원인, 등록권리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 납부금액이 '₩0원' 인 경우에는 은행에 제출하지 마시고, 반드시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On-Line(특허로)이나 서면(우편, 직접방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 (납부자용)

세입징수관서	특 허 청	
계좌번호	1 2 7 9 9 6 - 6	
납부자번호	0131- - - - -	
출원·등록·심판번호	- -	
특허(등록)료 및 수수료		원
등록면허세		원
지방교육세		원
인지세		원
총금액		원
정상납부기일		
* 금액기재 앞 난에 ₩ 표기 후 금액을 기재함.		

납부자성명	
주소	

위 금액을 영수하였습니다.

면제/감면사유



한국은행취급점 영수인

징수결정전 납입 납부서 (수납은행용 또는 한국은행용)

세입징수관서	특 허 청	
계좌번호	1 2 7 9 9 6 - 6	
납부자번호	0131- - - - -	
출원·등록·심판번호	- -	
특허(등록)료 및 수수료		원
등록면허세		원
지방교육세		원
인지세		원
총금액		원
정상납부기일		
* 금액기재 앞 난에 ₩ 표기 후 금액을 기재함.		

위와 같이 수납 의뢰하오니 영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납기관에서는 굵은 선 안의 내용을 반드시 전산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취급점 영수인

7. ~ 10. (생략)

③ (생략)

제3조(실용신안등록료 및 실용신안 관련 수수료) ① (생략)

② 「실용신안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용신안등록료 및 그 밖의 실용신안등록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략)

6. 등록사항의 경정·변경(행정구역 또는 지번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 및 등록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취소·말소 또는 회복등록료 : 매건 5천원

7. ~ 10. (생략)

③ (생략)

제4조(디자인등록료 및 디자인 관련 수수료) ① (생략)

② 「디자인보호법」 제79조에 따른 디자인등록료(관련디자인등록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밖의 디자인등록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 10.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3조(실용신안등록료 및 실용신안 관련 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5. (현행과 같음)

6. -----

-----취소-----

7. ~ 10.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4조(디자인등록료 및 디자인 관련 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 관련 각종 증서의 교부신청 또는 각종 서류의 사본 교부신청 등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허증, 실용신안등록증, 디자인등록증, 관련디자인등록증, 상표등록증, 단체표장등록증,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증, 업무표장등록증의 재교부신청료

가. 재교부신청을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매건 5천원

나. 재교부신청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 매건 6천5백원

다. 온라인으로 재교부신청하고 온라인으로 수령하는 경우(외국어 특허증, 외국어 실용신안등록증, 외국어 디자인등록증은 제외한다): 무료

----- 발급 신청 -----

----- 발급 신청 ----

1. 특허증, 실용신안등록증, 디자인등록증(관련디자인등록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상표등록증(단체표장등록증,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증, 증명표장등록증,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증, 업무표장등록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외국어특허증, 외국어실용신안등록증, 영어디자인등록증, 영어상표등록증(영어 단체표장등록증, 영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증, 영어 증명표장등록증, 영어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증, 영어 업무표장등록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재발급 신청료

가. 재발급 신청을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매건 5천원

나. 재발급 신청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 매건 6천5백원

1의2. 휴대용 특허증,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 휴대용 디자인등록증, 휴대용 관련디자인등록증, 휴대용 상표등록증, 휴대용 단체표장등록증, 휴대용 지리적표시 단체표장등록증, 휴대용 업무표장등록증의 교부신청료

가. 교부신청을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매건 7천원

나. 교부신청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 매건 9천원

2. 각종 서류의 등본·초본의 교부신청료

가. 온라인으로 교부신청하고 온라인으로 수령하는 경우: 무료

나. 그 밖의 경우: 매건 5백원. 다만, 교부하는 서류가 10면을 초과하는 경우 제5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금액을 가산한다.

3. (생략)

4. 등록원부의 사본 또는 기록

다. 온라인으로 수령하는 경

우: 무료

1의2. 휴대용 특허증,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 휴대용 디자인등록증, 휴대용 상표등록증, 휴대용 외국어특허증, 휴대용 외국어실용신안등록증, 휴대용 영어디자인등록증, 휴대용 영어 상표등록증의 발급(재발급을 포함한다) 신청료

가. 발급 신청-----

나. 발급 신청-----

2. -----
발급 신청료

가. ----- 발급 신청----

나. -----.
--- 발급-----

-----.

3. (현행과 같음)

4. -----

사항의 교부신청료

가. 온라인으로 교부신청하고
온라인으로 수령하는 경
우: 무료

나. 그 밖의 경우: 매건 5백원.
다만, 교부하는 서류가 10
면을 초과하는 경우 제5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금액
을 가산한다.

5. 출원 관련서류, 등록 관련서
류, 이의신청 관련서류, 심판
관련서류와 「특허법」 제63
조의2, 「실용신안법」 제15
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
법」 제63조의2, 「디자인보
호법」 제55조 또는 「상표
법」 제49조에 따른 정보제공
관련서류의 사본 교부신청료
및 공보류(마이크로필름류 및
광디스크류를 포함한다) 또는
도서의 복사 신청료

가. ~ 다. (생략)

6. ~ 8. 삭제

9. (생략)

②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에 따른 각종 증서 또는 서류를

----- 발급 신청료

가. ----- 발급 신청-----

나. -----.
---- 발급-----

-----.

5. -----

----- 발급 신청료

가. ~ 다. (현행과 같음)

9. (현행과 같음)

② -----

우편으로 교부 신청하는 경우에
우송에 드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7조(특허료·등록료·수수료
및 심사청구료 등의 면제 및 감
면)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호에서 정
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 9의2. (생략)

<신설>

10. (생략)

③·④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동으로 출원하
여 「특허법」 제83조제1항제1
호(「실용신안법」 제20조에 따

----- 발급 -----

-----.

제7조(특허료·등록료·수수료
및 심사청구료 등의 면제 및 감
면)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9의2. (현행과 같음)

9의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제6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기
관의 경우(개인, 소기업, 중기
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또
는 지방자치단체가 신탁을 설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4년분부터 존속기간까지의 특
허료·실용신안등록료 및 디
자인등록료의 100분의 50

10.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⑤ -----

식재산포인트를 부여한다.

1. · 2. (생략)

<신설>

② 삭제

③ · ④ (생략)

<신설>

1. · 2. (현행과 같음)

3. 제8조제16항에 따라 특허료
· 등록료 또는 수수료를 자동
납부하는 경우 등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해당
하는 경우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의3(국선대리인이 선임된 당
사자에 대한 심판청구료 등의
감면에 관한 특례) 「특허법」
제139조의2(「실용신안법」 제
3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디자인보호법」
제125조의2 또는 「상표법」 제
124조의2에 따라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당사자가 특허심판원장
에게 납부한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수수료는 국선대리인이 선
임된 해당 심판사건에 대한 심
결의 등본이 송달된 후 당사자
의 청구에 따라 이를 반환한다.
다만,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국선대리인 선임의 취소 또는 국선대리인 사임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제2조제3항제1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

2. 제3조제3항제1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

3. 제4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에 따른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

4. 제5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에 따른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

제8조(납부방법 등) ① ~ ④ (생략)

⑤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는 최초 3년분을 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납부방법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는 최초 3년분을 특허결정, 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증, 실용신안등록증 및 디자인등록증을 전자 문서에 의해 발급하는 경우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각각 1만

원(총액이 1만원 미만이면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⑥ (생략)

⑦ 상표권의 설정등록료, 지정상품 추가등록료 및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표법」 제74조에 따라 납부기간을 연장하려 할 때에는 그 납부기간 경과 전에 등록료납부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상표권의 설정등록료(「상표법」 제7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의 1회차 설정등록료를 포함한다)는 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상표법」 제7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의 2회차 설정등록료(1회차 설정등록료 납부 후 「상표법」 제93조제1항 또는 제94조제1항에 따라 상표권을 분할이전하거

⑥ (현행과 같음)

⑦ -----

1. -----

수료의 순서로 충당하고, 등록세를 등록료와 함께 일괄하여 납부한 때에는 등록세, 등록료의 순서로 충당한다.

⑱ 특허청장은 등록세 또는 인지세를 잘못 납부받은 때에는 이를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자의 청구에 따라 잘못 납부받은 등록세 또는 인지세를 반환한다.

제9조(반환할 특허료·등록료·수수료 및 등록세의 납부사항 정정) ① 「특허법」 제84조, 「실용신안법」 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84조, 「디자인보호법」 제87조, 「상표법」 제79조 및 이 규칙 제8조제19항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납부일부터 1년 이내에 특허료·등록료·수수료 및 등록세 납부사항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삭 제

제10조(「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수수료) ①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에 관한

세----- 등록
면허세-----
----- 등록면허세-----
-----.

⑱ ----- 등록면허세 --

----- 등록면허세 -----
-----.

제9조(반환할 특허료·등록료·수수료 및 등록면허세의 납부사항 정정) ①-----

----- 등록면허세 -----
-----.

제10조(「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수수료) ①-----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략)

3. 조사료

가. 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하는 경우 : 국어 조사의 경우 매건 45만원, 영어 조사의 경우 매건 130만원. 다만,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22에 따라 특허청장은 심사관이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할 때 해당 국제출원의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다른 국제출원의 국제조사보고서를 이용하거나 해당 국제출원과 관련된 국내출원의 심사의 결과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청구에 따라 납부된 조사료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한다.

나. (생략)

4. ~ 11. (생략)

② (생략)

-----.

1. 2. (현행과 같음)

3. ----

가. -----

----- 120만원.

---- 반환(제4항에 따라 조사료를 감면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한다.

나. (현행과 같음)

4. ~ 11.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국제출원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1. 삭 제

2. 「특허협력조약 규칙」 제96조 수수료표 item3(d)의 규정에 따라 출원서, 명세서, 청구 범위 및 요약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자에 대하여 300 스위스프랑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④ 「특허법」 제199조 또는 「실용신안법」 제34조에 따라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에 대한 심사청구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

③-----
-----.

2. -----
----- item4(c)-----

-----.

④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자로서 해당 국가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자(둘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출원인 모두가 해당해야 한다)가 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한 국제출원의 조사료에 대해서는 100분의 75를 감면한다.

⑤-----

1. -----

⑦ 제4항 각 호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경우의 제출서류에 관하여는 제7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⑧ 제4항 각 호에 따른 감면을 받지 못하고 납부한 자가 감면분을 반환받으려는 경우의 제출서류 등에 관하여는 제7조제8항을 준용한다.

같음)

⑧ 제4항 및 제5항-----

-----.

⑨ 제3항부터 제5항까지-----

-----.